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7일, 김형동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형동의원)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안 제41조)

개정안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형동의원안을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2항, 제3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2024년 4월 기준 12,387개가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202년 4월 기준 422개가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은 2024년 9월 기준 12개(초중등 7개, 고등 5개)가 있음.

개정안을 통해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그 사업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록면허세,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학교등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등에 전념하고,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사립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에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1조제5항)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그 학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5항이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2023년 4월 기준 1,123개가 있고, 국립대학법인은 2개가 있음.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그 학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이 설립·합병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학교법인의 신설 및 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41조제7항)

개정안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7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7항이 적용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30개 사립대학교에 63개 부속병원이 운영중임.

개정안을 통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부속

병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기숙사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42조제1항)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을 투입¹⁾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²⁾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임. 사립학교 등은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 3. (생략)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립하고, 용자를 모두 상환할 때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용자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적용됨.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사립대학 내에 사학진흥기금 등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유형을 “행복기숙사(사립)”과 국립대 부지 등에 사학기금을 재원으로 건립한 “행복기숙사(연합)”가 있음.

행복기숙사(사립)은 40개교에 52개의 사업(수용인원 23,043명)이 있고, 이 중 6개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의 용자를 모두 상환했음. 행복기숙사(연합)은 9개 사업(수업인원 7,988명)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복기숙사(사립) 및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진행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의 감면 연장 (안 제42조제2항)

개정안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일

물기 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안 제42조제2항).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